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, 운영 등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 등

-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
- 불필요한 중복 규정의 삭제

### 나.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 근거 신설

-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·결정 기준 근거 마련

### 다. 수당 및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정비

-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수당 등 지급 금지 규정 명시
-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 명확화

### 라. 법체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-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, 표현, 띄어쓰기 등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1) 「공직자윤리법」 (법률 제10982호, 2011.7.29일부개정, 2011.10.30 시행)

- 공직자윤리위원회(제9조)
-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(제18조)
-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(제18조의2)

※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통보 (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-3351/2011.9.23)

나. 예산조치 : 조치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2.10.4. ~ 10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”로, 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, “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”를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1인을 포함한 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5명”으로, “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를 “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원장을 포함한 3인”을 “3명”으로,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, “추천한 자”를 “추천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의 임명”을 “2명의 위원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공무원(이하 “구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(이하 “구 소속 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,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원”을 “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”으로, “위촉하고자 할”을 “위촉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후단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후단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관계법령에 의하여”를 “관계법령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3조의2(심사 기준)**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공무원중”을 “구 소속 공무원 중”으로, “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”을 “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”으로, “임기내”를 “임기 내”로, “구소속”을 “구 소속”으로, “재직중”을 “재직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”을 “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3분의2”를 “3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제7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제1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8조의2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의2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”를 “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, “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”를 “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간사등)”을 “(위원회의 간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실조사등”을 “사실조사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”를 “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8조(수당)**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2인의 임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공무원(이하 “구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직자윤리법</u>」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----- ----- 공직자윤리위원회 ----- 관 한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 1명을 포함한 5명----- -----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 -----.</p> <p>1. 3명----- ----- 있는 사람 ----- 추천한 사람 -----</p> <p>2. 2명의 위원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(이하 “구 소속 공무원”이라 한다) -----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,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	<p>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----- 위촉하려는-----</p>
<p>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각 호-----</p>
<p>1.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</p>	<p>1.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</p>
<p>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	<p>2. ----- 후단에 따른 -----</p>
<p>3.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4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	<p>4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</p>
<p>5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p>	<p>5. 그 밖에 ----- 관계 법령에 따라 -----</p>
<p>②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</p>	<p>② ----- 임직원-----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2(심사 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의회 의원 및 <u>소속공무원</u>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<u>불구하고 의회의원인</u>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, <u>구소속 공무원인</u>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 <u>재직중인</u>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<u>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</u>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한 차례만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구소속 공무원 중</u> ----- ----- <u>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</u> ----- <u>구소속</u> ----- <u>재직 중</u> -----.</p> <p>③ <u>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</u> 위원 중 ----- <u>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</u> -----.</p>
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<u>통할한다</u>.</p> <p>② <u>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총괄한다</u>.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</u>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<u>3분의2</u>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<u>3분의 2</u>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</p> <p>2.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</p> <p>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</p> <p>4.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</p> <p>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,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1. -- 제8조제7항에 따른 ----- ----- 제8조제12항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2. -- 제8조의2에 따른 -----</p> <p>3. -- 제22조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-----</p> <p>③ ----- 다음 각 호의 사항에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----- -----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----- ----- 사실조사 등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수당)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·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위원회 운영규정) 이 <u>조례</u>에 규정 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 한다.</p>	<p>제8조(수당)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 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위원회 운영규정) - <u>조례에서</u> - ----- 운영에 ----- -----.</p>